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1가단52372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서울특별시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21.

판 결 선 고 2022. 8. 18.

주 문

1. 별지 1.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2. 1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.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9.
12. 1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,307,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22,307,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백소영

별지